



박 영 인 이사장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자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에 필자는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축하하려고 그 현장에 갔다가 '자조금과 민주주의'의 단면을 다시금 실감하고 그냥 돌아왔다. 폭설과 정족수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준비위 세 단체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대의원회를 우선 열고 봐야 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탄 이유가 생겨 불필요한 토론과 혼란이 불가피했을 첫 모임에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씩씩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자조금은 많은 논란을 거치고 나아 비로소 자리가 잡힌다. 민주주의 성취와 마찬가지로이다. 육계 의무자조금도 이제까지 준비과정에서 겪어온 일과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절차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여럿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마음대로 잘 되어지던가.

민주주의처럼 자조금도 원칙 지켜야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 단지에 가면 '자유는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혀있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 본 일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5만여명의 미국 선남선녀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민주주의에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여기면

정치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는 50년대의 사사오입과 대통령 종신제 추진, 60년대의 군사정부, 70년대의 유신과 유정희, 80년대의 체육관 선거 등 많은 반민주적 정치행태와 그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찾으려는 민주화 투쟁을 경험했다. 오늘날도 그 여파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항상 외치는 것이다.

자조금 제도도 공짜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경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정치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왔다. 100년



전후하여 정치민주화된 선진국 농업에서 경제 민주화(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는 방법으로 자조금 제도(checkoff / levy system)를 실시한 것이다. 자조금 제도는 농업문제를 정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농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우리 농업도 구조조정과 개방화의 물결에서 자율적인 수급안정의 민주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자조금 제도를 90년대에 도입,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 자조금 제도는 20여년의 갖은 노력 끝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거저 의무자조금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자조금 돈이 생겼으니 그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된다. 자조금 원칙을 지켜야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조금 원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민, 대의원, 관리위원, 축산단체 및 연관산업, 언론인, 공직자 모두가 교육 대상이다.

잘못 뻥 첫 단추는 다시 고쳐 꿰어야 하는 법

우리의 자조금이 1990년 농발법에 하나의 조항으로나마 포함되기까지는 민주주의의 역정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치민주화의 열기가 대

단할 때라 경제민주화와 함께 농민도 농업민주화(농민의 주인의식 제고)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자조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계몽적 교육에 농민은 상당히 호응하는 편이었으나 정부주도, 농협활용 체계의 농정에 몸이 배인 입법, 행정부의 냉소적 저항은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조금의 첫 단추가 원칙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잘못 꿰어진 것이다. 즉 수급과 출하관련 생산자단체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에서 다루는 정도로 자조금의 참 모습이 변형, 법제화 된 것이다.

자조금은 의당 법정제도로 품목별 전체 산업의 자구대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기축으로 한 임의자조금 중심의 법제화(농발법)였던 관계로 의무자조금을 지향한 2002년의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도 축산단체(지원금 수령대상)가 자조금 사업의 주축이 되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는 품목산업의 자조금이 아니라 기존 축산단체의 자조금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잘못된 단추는 다시 꿰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축산자조금법의 골격

을 자조금 원칙에 맞게 재구성하여 기존단체의 이기성향에 안주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

단체의 자조금이 아닌 산업의 자조금

그 동안 축산 품목의 의무자조금 실시 과정에서 현행 법규상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조금법 제1조에서 ‘축산업’이 아닌 ‘축산단체’의 자조금으로 규정한 까닭에 기존단체(민법에 의한 협회와 농협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공동준비하는 절차상의 불협화음은 말할 것도 없고 대의원회(자조금 대표기구)의 무력화, 운용상의 비효율성 등을 겪고있는 것이다. 자조금은 그 품목산업 전체의 농민이 참여하는 제도이지 기존단체 구성원만의 자조금이 아니므로 관리위원회를 독자적인 기구화 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육계자조금의 경우에서 더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개의 기존단체가 관여하고 있어 무엇하나 제대로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 대의원회를 발족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해도 그 다음에 다시 세 단체가 함께 운용하는 일이 어떠하겠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단체의 사람을 많이 심고 또한 많은 사업을 얻어오려고 아귀다툼할 것이 뻔하다. 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전체 산업의 대표조직이어야 한다.

지난번 대의원총회 개최 준비과정에서 계육산



업 세 단체가 암암리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다. 특히 계열주체와 사육주체간의 관계, 독자사육 문제, 사육자끼리의 결속, 양 협회간의 위상 등에 대해서는 자조금과는 별도로라도 금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놓아두면 의무자조금이 아닌 임의자조금, 국내 계육산업의 후퇴(수입 계육에 밀려)가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 세 단

체는 모름지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금학회, 연구기관 등)로 하여금 이런 난제의 조정역할을 하도록 우선 대 토론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계자조금은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원칙을 따라야 하듯이 자조금도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여러 경험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농민의 자율과 정부의 감독 하에 법정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육계자조금은 세 단체의 구성원을 비롯한 전 산업의 종사자가 참여하는 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